

의안번호	2202463
의 퇴 인	박희승 의원
회 답 일	2024.7.18.
추 계 번호	24E0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소득 비과세소득 한도 상향 및 비과세 대상 추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13억원, 2029년 14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66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비과세 신설(안 제12조제2호아목)	-13	-13	-13	-14	-14	-66	-1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2호(비과세소득) 마목, 아목, 자목	○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비과세 대상 추가	—
		소득별 비과세한도	
		현행	
		개정안	
		(마목)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林木)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한도 600만원	비과세 한도 1,000만원
		(아목)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연 10억원 이하 수입에 대한 비과세 신설
		(자목) 임산물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연 10억원 이하 수입에 대한 비과세 신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마목	×	추계 자료의 부재 -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안의 신규 비과세 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세 신고 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움 ※ ①조립기간 5년 이상 ②600~1,000만원 구간의 소득액
2	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 아목	○	-
3	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 자목	×	추계 자료의 부재 -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개정안의 신규 비과세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소득세 신고 자료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식별 가능성의 이유로 추출이 어려움 ※ 연 10억원 이하 수입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2년 귀속 임업용 종묘생산업 영위자의 수입 및 소득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비과세 신설 시의 연간 소득세 감면액 수준을 추정
 - 추계기간 세수 감소액 규모는 임업소득의 연평균 증감 추세를 반영해 추계
- 이 법의 공포 후 시행한다는 개정안의 부칙을 감안하여 세수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방법) ‘인원 × 비과세대상 사업소득 금액 × 실효세율’로 감면액 추계

- (자료) 2022년 신고자료(국세청)의 임업용 종묘생산업 영위자 인원,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을 활용
 - 감면액 추계를 위한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 구간별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업용 종묘생산업 영위자 자료 역시 종합소득금액 구간별로 구분하여 활용
 - (비과세대상 소득금액) 1인당 비과세 수입금액(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산출
 -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전액이 비과세 대상
 -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비과세 한도액(10억원)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추정¹⁾
 - (실효세율) 종합소득 구간별로 실효세율을 산출하여 적용
- (비과세대상 인원 및 금액) 2022년 귀속 기준 임업용 종묘생산업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 중에서 동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569명이며, 이들의 총수입금액은 1,005억원, 사업소득 금액은 109억원 수준

[표 2] 임업용 종묘생산업 영위자의 소득 신고 현황: 2022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종합소득금액 구간	건수 (A)	총수입금액 (B)	사업소득 금액 (C=B-필요경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하	0~1천만원	169	9,111	584
	1~2천만원	121	12,218	1,010
	2~4천만원	118	17,921	1,789
	4~6천만원	55	14,101	1,212
	6~8천만원	33	6,138	799
	8천만원~1억원	15	5,804	780
	1억원~10억원 ¹⁾	41	10,465	2,174
총수입금액 10억원 초과	1억원 이하 ²⁾	8	10,313	419
	1억원~10억원 ³⁾	9	14,471	2,180
합 계		569	100,542	10,947

주: 1) 종합소득금액 10억원 초과 구간은 임업용 종묘생산업 사업소득이 과세기준에 미달하여 미포함

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신고자는 소수로, 개별 납세 식별 가능성이 있어 합계로 자료가 제공됨

3) 종합소득금액 10억원 초과 구간 대상자는 없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동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현행 비과세 제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준용함

- 현행 비과세 제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 비과세 소득금액 계산(예시): 수입금액 12억원, 필요경비 10억 8,000만원, 소득금액 1억 2천만원인 경우 비과세되는 수입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금액은 1억원(1억 2천만원×10억원/12억원)임

(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 (연간 감면액)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는 10억원 이하의 수입금액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2022년 귀속 기준 신고자료로 추정된 소득세 감면액은 12억원 수준

○ (총수입금액 10억원 이하자)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 감면액은 8.7억원으로 추정

[표 3]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2022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단위: 명, 만원, %)

종합소득금액 구간	신고 실적			감면액 추정		
	건수	1인당 평균 총수입금액 ¹⁾	1인당 평균 소득금액 ¹⁾	1인당 비과세금액	실효 세율 ²⁾	감면액 (억원)
	A	B	C	D=C	E	F=A×D×E
0~1천만원	169	5,391	346	346	1.4	0.1
1~2천만원	121	10,098	835	835	2.3	0.2
2~4천만원	118	15,187	1,516	1,516	4.6	0.8
4~6천만원	55	25,638	2,204	2,204	7.5	0.9
6~8천만원	33	18,600	2,421	2,421	10.0	0.8
8천만원~1억원	15	38,693	5,200	5,200	12.2	1.0
1억원~10억원	41	25,524	5,302	5,302	22.6	4.9
합 계	552	—	—	—	—	8.7

주: 1) 1인당 평균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전체 금액을 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함

2) 실효세율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로 산출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총수입금액 10억원 초과자)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 감면액은 3.3억원으로 추정

— 비과세 수입금액(10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1인당 평균 소득금액 × 10억원/총수입금액'으로 산출

[표 4]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2022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단위: 명, 만원, %)

종합소득금액 구간	신고 실적			감면액 추정		
	건수	1인당 평균 총수입금액 ¹⁾	1인당 평균 소득금액 ¹⁾	1인당 비과세금액	실효 세율 ²⁾	감면액 (억원)
	A	B	C	D=C×10억원/B	E	F=A×D×E
1억원 이하	8	128,913	5,238	4,063	5.9	0.2
1억원~10억원	9	160,789	24,222	15,065	22.6	3.1
합 계	17	—	—	—	—	3.3

주: 1) 1인당 평균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전체 금액을 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함

2) 실효세율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로 산출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임업용 종묘생산업에 영위하는 자의 연 10억원 이하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6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의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 기준으로 추정한 감면액(12억원)이 최근(2013~2023년) 임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2.1%)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임업소득(산림청, 「2023년 임가경제조사」): ('13년) 832만원 → ('23년) 1,023만원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비과세	-13	-13	-13	-14	-14	-66	-13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